

<p>運營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首都로서의 特殊性이 認定되고, 自律性이 保障되는 制度的인 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</p> <p>自律的인 地方自治運營을 制約하고 있는 法令, 制度를 면밀히 검토해서 中央政府에서 改善해야 될 事項은 적극 建議해 나가고, 市 自體的으로 改善해야 할 事項은 적극 推進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여러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감사하고자 합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報告에 앞서서 우리 企劃管理室 所屬 主要 幹部를 紹介를 해 드리겠습니다.</p> <p>(幹部紹介: 財政企劃官 金淳直, 審査分析 擔當官 金尙範, 投資管理擔當官 金旻圭, 市政開發擔當官 金基同)</p> <p>이어서 企劃管理室所管 懸案事項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/p> <hr/> <p>(報告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組織改編推進現況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推進背景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지방화·분권화와 국제화·정보화 등 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민선시대 시정의 기본틀을 마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主要改編方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자치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민선시장 보좌기능 강화 ○정책개발 및 예산, 제정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○도시시설안전관리 및 긴급구난구조기능 강화 ○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·조정기능 강화 ○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·녹지 보전기능 강화 ○노인, 아동, 여성, 장애인 등 사회복지서비스기능 강화 ○행정지도, 감사 등 내부통제 관리기능 축소조정 <p><input type="checkbox"/> 向後推進計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현재 검토중인 조직개편안을 '95년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관계규정 개정후 '96년초 시행 <p><input type="checkbox"/> 推進上의 隘路-自律組織權 未治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국단위 개편-대통령령 개정 ○4급이상 증원-내무부 승인 <p><input type="checkbox"/> 自治區 組織整備-自律權 附與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자치구 고유 실정에 맞는 조직정비 추진 중(기 완료: 종로, 서대문, 성북, 동작, 관악) *기준정원 상항시 내무부장관 승인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權限 및 事務配分 調整現況</u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본격적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'94년부터 국가·시, 시·구간의 합리적인 업무조정 및 위임법규 정비 추진</p> </div> <p>I. 行政事務 總調査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국가·시·자치구간 사무조정작업 및 각 분야별 행정자료 활용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대 상: 서울시·자치구 수행 모든 사무 <input type="checkbox"/> 조사기간: '94.3~10(실무대책반 구성) <input type="checkbox"/> 조사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국가·서울시·자치구의 사무구분 ○사무수행기관 및 기능분석 ○사무근거법, 기능성격별 및 기관·부서별 현황 <input type="checkbox"/> 결 과: 총 10,459개 사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시: 6,521(고유 4,562(70.0%), 위임 1,959(30.0%)) 자치구: 3,938(고유 1,945(49.4%), 위임 1,993(50.6%)) <p>II. 權限 및 事務配分 再調整 推進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재조정방법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외부적: 개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국가·시·구사무의 완전한 조정 <input type="checkbox"/> 내부적: 개별법령의 개정없이 권한위임조례·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시·구사무의 일시적 배분 </div> <p>1. 國家事務의 地方移讓 推進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대 상: 국가사무 및 지방위임사무(총 2,145개)를 중점 조사하여 지방자치기능과 밀접한 사무를 이양건의 <input type="checkbox"/> 실 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1차 건의('94.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이양 및 위임대상사무 498개 사무
--	--

<p>이양 건의 ※시의회(지방자치발전특위)에서 정부에 성명발표 및 이양요청('94.10) •총무처 「지방이양합동심의회」에서 122 건 이양확정 ○2차건의('95.7)(내무부소관) •이양 및 위임대상사무 53개 사무 이양 건의</p> <p>□문제점 ○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관 요구사항은 총무처가 중심이 되어 연1회 「지방이양합 동심의회」를 거쳐 이양 또는 위임 ○이때 이양 확정되어도 개별 법령의 개정 이 필요하므로 지방이양을 하겠다는 정부 및 입법자의 의지 미흡</p> <p>□향후 추진방향 ○건의한 이양대상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 ○지방자치기능과 밀접한 국가사무의 지속적 이양 추진</p> <p>2. 市·區間 事務 再調整</p> <p>□시·구간 사무배분 기준 ○시사무:시전체의 기획·조정이 필요한 사 무와 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인 사무 ○자치구위임사무:시사무중 주민의 복지에 관한사무중 현저성을 요하는 사무와 구체 적인 집행이 필요한 사무</p> <p>□자치구 위임 실적:중전 470개→현행 965개 ○국가(기관위임)사무는 행정권한위임규칙, 지방사무는 행정권한위임조례로 분리 위임 ○신규위임 대폭 확대</p> <p>□문제점 ○법령상 시·구사무의 구분없이 서울시 사 무로만 규정되어 있어 시·구사무의 완전 한 배분 곤란, 위임에 의존 ○기피사무에 대한 위임 거부</p> <p>□향후 추진방향 ○시민생활과 밀접한 인·허가사무, 시설관 리업무 등 자치구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한 사무의 위임을 지속 추진 ○시·구사무의 완전한 배분을 위하여 관계 법령개정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財政與件 및 財源擴充 方案</p> <p>1. 財政與件</p>	<p>1) 세입 여건</p> <p>□부동산 과세 중심의 시세구조 ○취득세·등록세 등 부동산 보유관련세수 : '94세수의 41% ○부동산 거래 정도에 따라 시세규모 영 향:안정적인 재원조달 취약 ○부동산 과표 현실화율(공시지가의 30% 수준):시세·신장률 둔화</p> <p>□사용료·수수료의 비현실화 ○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시책에 따라 요금 인상 한계 ○상수도요금:생산원가의 69%, 하수도요 금:처리원가의 72% 지하철요금:수송원가의 68% *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체계, 시 부 채 누적의 주요인</p> <p>□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○지방교부세·지방양여금 대상에서 배제 -지방교부세 재원중 '94 서울지역 정 수 45% 점유 -지방양여금 재원중 '94 서울지역 정 수 39% 점유 ○각종 정부기금·특별회계에서 서울시 지 원 규모 불합리 -지하철 건설 지원:서울시 21%, 타 도시 30% ○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정 지원을 이하 지원</p> <p>□부채규모의 증가 ○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각종 공채 발행 ·정부기금 등 차입 ○'95.8말 기준 서울시 부채(시 투자기관 포함):4조 5,964억원 -지하철 분야:4조 649억원(88%), 상 ·하수 분야 3,948억원(9%) -주택 건설 등 기타:1,367억원(3%) ○'95원리금 상환액:6,594억원(원금 4,041, 이자 2,553)</p> <p>2) 세출예산</p> <p>□타 기관 법정 지원금 과다 ○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3조 8천억원중 31%(1조 1,659억원)점유 -자치구 교부금 7,549억원, 교육청 전 출금 4,110억원 ○세출예산 편성의 경직성 초래, 신규 투</p>
---	---

<p>자재원 마련의 어려움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인구과밀·지가상승으로 단위 투자사업비 증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지하철·도로사업 등의 보상비 지출 규모 급증 ○도로율 1%증가시 소요재원 : 11,000억원('90)→27,300억원('95) ○지하철 1km 건설비 소요재원 : 380억원('90)→510억원('95) <p><input type="checkbox"/>환경·복지부문 투자수요 증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그동안 지하철·도로, 주택건설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재원 배분 ○'90년대 이후 환경·복지 부문에 행정수요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복지분야 : 1,803억원('90)→2,890억원('95) -환경분야 : 998억원('90)→11,740억원('95) <p><input type="checkbox"/>부채원리금 상환부담 가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현재 확정된 주요시책 사업의 마무리에 2000년까지 7천억원 내외 부채 도입 ○원리금 상환 규모 : 2000년까지 연평균 7,900억원내외 예상 <p>2. 財源 擴充 方案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불합리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선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지방교부세·지방양여금 교부대상에 서울시·자치구가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○각종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정지원율 이행 요구 <p><input type="checkbox"/>세입의 지속적인 확충 도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지방세 비과세·감면·대상 축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 ○지하철 요금, 상·하수 요금의 현실화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 인상 <p><input type="checkbox"/>자치구 재원확충 방안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현행 지방세법 체계하에서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 심화 현상 ○담배소비세(시세)와 종합토지세(구세)의 상호교환,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 완화 및 지역간 발전 도모 <p><input type="checkbox"/>국세와 지방세제의 합리적인 개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현행 지방세는 부동산 과세 중심의 세 	<p>수 신장률이 낮은 세목 위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우선 지방세적인 성격이 강한 전화세의 이양 요구 ○주행세 등 신규 세원의 도입 요구 <p><input type="checkbox"/>기타 환경개선 부담금,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서울시 교부 규모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추진, 시 가용 투자재원 확충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首都圈 紛爭 對備 現況</u></p> <p>(수도권 행정협의회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設置根據 :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組 織</p> <p>(本協議會)-수도권 5개 시·도 자치단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會 長 : 서울특별시장 ·常任委員 : 인천광역시, 경기도지사 ·非常委員 : 강원도지사, 충북도지사 <p>(實務協議會)-수도권 5개 시·도 기획관리실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委員長 :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 ·委 員 : 인천, 경기, 강원, 충북, 기획관리실장 <p><input type="checkbox"/>會議開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定期會議 : 연2회(2~3월, 8~9월중) ·臨時會 : 필요시(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, 위원의 요구시) <p><input type="checkbox"/>處理現況 : 총 86건(합의 48, 중앙부처건의 20, 계속협의 18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懸案 事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의 14건 <p><input type="checkbox"/>協議日程 : '95.11월 중순(실무협의회 11월 초)</p> <hr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/> <p>이상 企劃管理室所管 報告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容富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企劃管理室長의 報告內容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여 주십시오.</p> <p>네, 高溶振委員 質疑하여 주십시오.</p> <p>○高溶振委員 高溶振委員입니다.</p> <p>지금 報告하신 것 잘 들었고요,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 몇 가지 質問하는 형식으로</p>
--	--